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6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한 관내 분뇨 수집·운반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업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사용료 부과 대상 범위를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로 한정(안 제10조)
- 나. 과오납 사용료 환급절차 및 소멸시효 규정 마련(안 제23조의1 및 제23조의2)
- 다. 연체금 등 일할 계산방식 도입(안 제23조의2)
- 라.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 지원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20조의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폐업 지원 신청 시 마련)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 08. 26. ~ 20. 0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징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로 한다.

제2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1(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범위는 평창군 관내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제2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

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 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3년
2. (채무)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5년

제24조제1항 중 “가산금을”을 “가산금(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 $\text{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text{체납일수} / \text{월력일수}$)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u>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u>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	----- ---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
② ~ ③ (생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1(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법 제56조의2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폐업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평창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공고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대상의 범위는 평창군 관내에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2011. 4. 5. 이전에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	

<신 설>

제23조의1(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① 군수는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의 착오 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부과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환불을 청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략)

제23조의2(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 미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3년
2. (채무) 과오납된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 부담금 등 : 5년

제24조(가산금 및 독촉) ① -----

 --- 가산금(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가산금=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을 -----.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 통지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과 오 납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납부 (납입)액	과 오 납 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환 불 금 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 당 금 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 당 금 액			충당후의 미 납 액			
<p>「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의1 제2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통지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 font-size: 1.2em;">평 창 군 수</p>							

[별지 제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					처리기간
					즉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년도	월분	내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청구금액
<p>「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의1 제4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환불을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청구자 : 주소 _____ 성명 _____ (인)</p> <p>평창군수 귀하</p>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년도	월분	내용	과오납 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p>위의 금액을 영수함.</p> <p>년 월 일 _____</p> <p>영수자 성명 _____ (인)</p>					

관계법령

< 하수도법 >

제15조(사용의 공고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개시 시기, 배수구역(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그 하수처리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류식하수관로 및 분류식하수관로의 현황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도면을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의 범위에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용자알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용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4. 5.]

제65조(사용료 등) ①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

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총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3조(강제징수)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하수도법 시행령 >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 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민법 >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지방재정법 >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5조(지방세)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8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

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③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 ⑤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다만,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3조 또는 제84조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지방세법」 제91조, 제103조, 103조의19, 103조의34, 103조의41 및 제103조의47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 지방세징수법 >

제30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30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은 제30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나.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

1의2. "지방세외수입"이란 지방세외수입금과 그 밖의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으로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을 말한다.

2. "지방세외수입관계법"이란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법률로서 이 법을 제외한 법률을 말한다.
3. "징수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5. "체납자"란 납부의무자로서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6. "가산금"이란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하수도법 제56조의2항에 의거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우리 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신청을 할 경우 폐업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이 소요됨

나. 관련 조문 : 평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의1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금번 추계는 강원도 맑은물보전과-15763(2014.11.03)호 관련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산정 등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용역(강원도, 2014.10.)」 결과를 기준으로 추계함.
- 상기 용역의 폐업지원금 산정기준은 3년간(2011년~2013년)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평균영업 이익과 차량 보유 톤수를 감안한 결과이며 향후 실제 폐업지원금 지급 시 달라질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 원)

구 분	영업폐지지원금	폐업차량예상이익	합 계
태백산업	37,995,000	24,659,000	62,654,000
보람환경	37,995,000	24,659,000	62,654,000
무지개환경	37,995,000	24,659,000	62,654,000
환경위생공사	37,995,000	24,659,000	62,654,000
합 계	151,980,000	98,636,000	250,616,000

다. 자원조달방안

- 주요자원 조달은 군비 100%로 조달할 계획임.

3. 작성자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63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세 출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재원 조달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지방세	62,654	62,654	62,654	62,654	-	250,616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